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504

발의연월일: 2021. 11. 24.

발 의 자:조명희·김석기·김성원

박대수 · 박덕흠 · 성일종

조경태 · 추경호 · 하영제

홍문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의 일정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 특례와 내국인이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일정액을 공제하여 주는 통합투자세액공제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 중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세액공제는 2021년 12월 31일로 일몰될 예정임.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의 대두로 인하여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만큼 현행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 특례에 비하여 보다 적극적인 지원 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 경쟁력 확보 및 기업의 연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 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연구·인력개발비 에 대한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 월 31일까지로 4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24조제1항 등).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원천기술"을 "미래 유망성 및 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신성장·원천기술"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제1호"를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와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를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로 한다.

-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 ·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1호 및 제2호를 동시에 적용 받을 수 있는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 2. 연구 · 인력개발비 중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국가전략기술"이라 한다)을 얻기 위한 연구개 발비(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 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 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기업유형에 따른 비율

- 1)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40
- 2) 그 밖의 경우: 100분의 30
- 나.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배수를 곱한 비율(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목에 1) 및 2)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100분의 3"을 "100분의 3(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광정방법 및"을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관정방법 및"을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관정방법 및"을

1) 신성장 · 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설(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

2)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6(중견기업은 100분의 8, 중소기업은 100분의 16)에 상당하는 금액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 정규정 중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에 관한 부분은 2021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연구개발비부터 적용한다.

제3조(통합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관한 부분은 2021년 7월 1일 이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 세액공제) ① -----세연도에 연구개발 및 인력개 발에 지출한 금액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 •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 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 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는 -----. 이 경우 제1호 및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제2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연구 · 인력개발비에 대해 발생한 해당 연구 · 인력개발비 서만 적용한다. 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1호 및 제2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 서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1.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 1. -----미래 유 령으로 정하는 신성장・원천 망성 및 산업 경쟁력 등을 고 <u>기술</u>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 려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 고 인정되는 기술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신 · 원천기술 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 연도에 발생한 신성장·원천 기술 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생 략)

나.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 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서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배수를 곱한 비율. 다만, 1 00분의 10(코스닥상장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15)을 한도로 한다.

<신 설>

| 성장·원천기술"이라 한다) |
|-----------------|
| |
| |
| |
| |
| 가. (현행과 같음) |
| 나 |
| |
| |
| 말한다. 이하 |
| |
| <u>이 조에서 같다</u> |
| <u>이 조에서 같다</u> |
| |
| |
| |
| |

2. 연구·인력개발비 중 국가안 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국가전략기술"이라 한다)을 얻기 위한 연구 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라 한

3.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 나 제1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 (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 도에 발생한 국가전략기술연 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기업유형에 따른 비율 1)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40 2) 그 밖의 경우: 100분의 30 나.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 액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 개<u>발비</u>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배수를 곱한 비율(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 00분의 10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제1호 및 제2호-----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에해당하는 금액가.·나.(생략)

②·③ (생 략)

④ 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일반연구·인력개발 비와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 발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區分經理) 하여야 한다.

⑤・⑥ (생 략)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

| 가.・나. (현행과 같음) |
|------------------------|
| ②・③ (현행과 같음) |
| ④ <u>제1항제1호 또는 제2호</u> |
| <u>일반연구·인력개발</u> |
| 비,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 |
| 비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
| |
| |
| ⑤·⑥ (현행과 같음) |
|]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
| |
| |
| |
| |
| |
| |
| |

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1. (생략)
- 2. 공제금액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 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 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3,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신 설>

| 1. (현행과 같음) |
|-------------------|
| 2 |
| フト |
| |
| |
| |
| |
| |
| <u>다음의 어느 하나에</u> |
|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
|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 |
| <u>다</u> . |
| |
| |

1)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2025년 12월 3

<신 설>

- 나. 추가공제 금액: 해당 과 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 간 연 평균 투자 또는 취 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 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한다.
- ② ~ ④ (생 략)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

2

(5)

| <u>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10</u> |
|--|
| <u>0</u> 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 |
| 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
| <u>12</u>)에 상당하는 금액 |
| 2)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 |
| 를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 |
| 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
|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
| 이라 한다)에 2025년 12월 |
|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1 |
| 00분의 6(중견기업은 100 |
| 분의 8, 중소기업은 100분 |
| 의 16)에 상당하는 금액 |
| 나 |
| |
| |
| |
| |
| |
| <u>10</u> |
| <u>10</u> <u>0분의 3(국가전략기술사업</u> |
| _ |
| |
| 0분의 3(국가전략기술사업 화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
| 0분의3(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경우에는100분의4) |
| 0분의 3(국가전략기술사업 화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4) |

정을 적용할 때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신성장사업화시설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신성 | 장사업 | 화시설 | 및 국 |
|--------------|-----|------|-----|
| | | | |
| <u>가전략기술</u> | 사업화 | ·시설의 | 판정방 |
| | | | |
| 법, | | | |